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05호

도시관리계획(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75호(2006.03.09)로 결정 및 은평구고시 제2016-29호(2016.03.31.)로 최종 변경 결정된 「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16년 제6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16.05.11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6년 7월 14일

서울특별시장

I. 결정 취지

- 「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」 내 역촌동 17-17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공동개발 하고자 가구 및 획지계획 등을 변경하는 사항임

II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III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

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
1. 용도지역 및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)

가. 가구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가 구 번 호		비 고
	기 정	변 경	
준주거지역	A-04, A-05, A-09, A-10, A-11, B-01(1), B-03(1), B-04(1), B-05(1), C-01, C-02, C-03, C-07, C-08(1), C-9, C-12, C-13	A-04, A-05, A-09, A-10, A-11, B-01(1), B-03(1), B-04(1), B-05(1), C-01, C-02, C-03, C-07, C-08(1), C-9, C-12, C-13	간 선 부 (B-04(1) 면적 증가)
	A-03, A-06, B-01(2), B-01(3), B-03(2), B-04(2), C-04, C-06	A-03, A-06, B-01(2), B-01(3), B-03(2), B-04(2), C-04, C-06	이 면 부 (B-04(2) 면적 감소)
제3종일반 주거지역	A-01, A-02, A-07, A-08, B-02, B-05(2), C-05, C-08(2), C-14	A-01, A-02, A-07, A-08, B-02, B-05(2), C-05, C-08(2), C-14	

■ 변경 사유서

구분	변 경 사 유
변경	준주거지역 B-04(2)내 2필지(17-21, 17-22)를 B-04(1)로 가구계획 변경(준주거 이면부 → 간선부로 변경)

※ 가구계획 변경(준주거 이면부 → 간선부)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계획(용도, 밀도, 높이계획)도 변경됨

나. 획지 결정(변경)조서

- (1) 최대개발규모(변경없음)
- (2) 필지분할(변경없음)
- (3) 획지단위개발(변경)

구분	가구 번호	지 번	면적(㎡)	계획내용	비 고
기정	B-04 (1)	역촌1동 17-18, 17-19	325.6	획지단위 공동개발	-간선부(20m)이상 · 이면부차량출입필요
		역촌1동 17-17, 17-20	403.9	획지단위 공동개발	-간선부(20m)이상 · 이면부차량출입필요
변경	B-04 (1)	역촌1동 17-18, 17-19	325.6	획지단위 공동개발	-간선부(20m)이상 · 이면부차량출입필요
		역촌1동 17-17, 17-20, 17-21, 17-22	727.8	획지단위 공동개발	-간선부(20m)이상 · 이면부차량출입필요

■ 변경 사유서

구분	변 경 사 유
변경	공동개발(2필지→4필지)에 따른 획지계획 변경

- (4) 획지간 공동개발(변경없음)
- (5) 공동개발(변경없음)

2.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- 가.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(변경없음)
- 나.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(변경없음)
- 다.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(변경없음)
- 라. 건축물의 배치 결정조서(변경없음)

③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④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IV.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조건사항)

○ 건축심의회시 다음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반영

- ▷ 간선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상1층 주차장은 지하 또는 지상층으로 위치를 조정하

- 여 근린생활시설 도입 등을 통한 가로연속성 및 가로활성화 방안 검토
- ▷ 중앙 코어(엘리베이터, 계단) 및 1층 차량 진·출입구 부분은 이용자 안전·편의 및 교통약자를 배려한 계획이 되도록 검토

V. 관계도면 : 붙임참조(세부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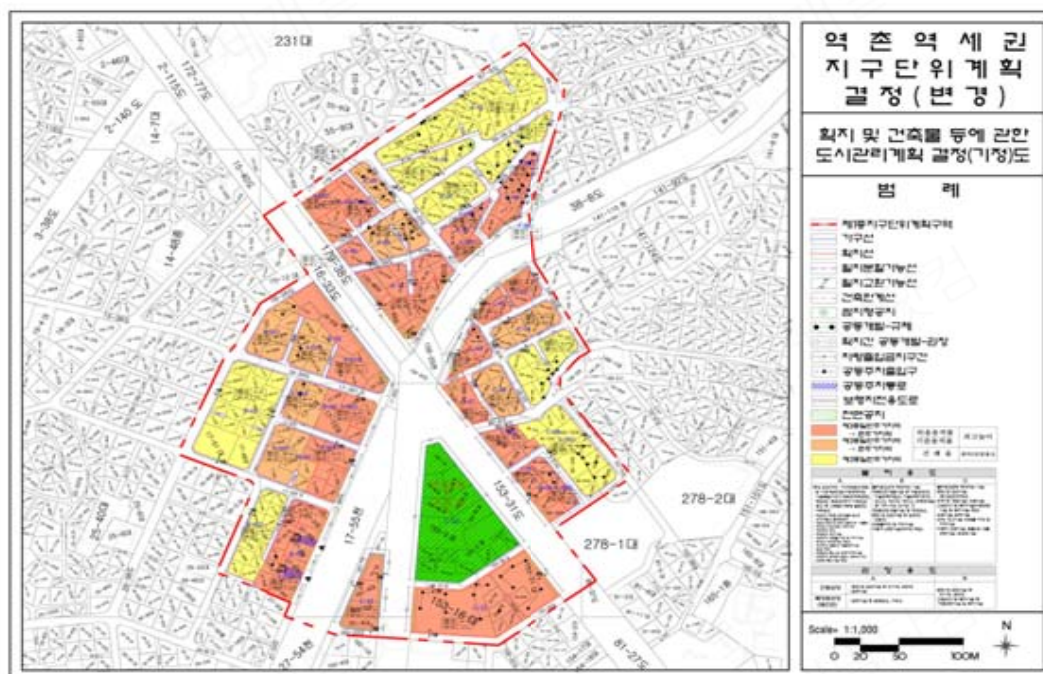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VI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02-2133-8390) 및 은평구 도시계획과(☎02-351-7405)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
[붙임]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
[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기정)]



[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변경)]

